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제200021호, '24. 1. 16. 공포, '25. 1. 17. 시행)됨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추정되는 질병의 종류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등으로 정하고,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약물적·물리적·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출근·퇴근 경로 등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선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의 종류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의 종류를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규정함

나. 건강손상자녀 출산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인자 조항 신설 (안 제45조의2, 별표8)

- 건강손상자녀 출산 위험성이 있는 유해인자를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그밖에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통해 고시하는 유해인자로 규정함

다. 건강손상자녀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애의 등급 기준에 관하여 상이연금등급 결정 기준(영 제3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45조의3)

라.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은 별도 추가 심의 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안 제24조)

마.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도록 기준 구체화 (안 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의 세부기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4. 직업성 암
5. 정신질환
6.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제24조제1항제2호 중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편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지”를 “의지”로 한다.

제2장제6절의2(제45조의2 및 제4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5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8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45조의3(건강손상자녀 장애의 정도) 법 제41조의4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등급”에 관하여는 영 제31조를 준용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근·퇴근·부임·귀임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은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않되, 그 일탈 또는 중단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은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별표 2 제1호라목에 1)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2)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3) 군인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4)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5) 군인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국방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바. 직업성 암

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건강손상자녀 출산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2 관련)

1. 화학적 유해인자

- 가. 납(CAS 7439-92-1)
- 나. 니켈(CAS 7440-02-0)
- 다. 벤젠(CAS 71-43-2)
- 라. 사염화탄소(CAS 56-23-5)
- 마. 수은(CAS 7439-97-6)
- 바. 스토타드 솔벤트(CAS 8052-41-3)
- 사. 스티렌(CAS 100-42-5)
- 아.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 자. 유기수은(CAS 115-09-3)
- 차. 이산화황(CAS 7446-09-5)
- 카. 이황화탄소(CAS 75-15-0)
- 타. 일산화탄소(CAS 630-08-0)
- 파. 카드뮴(CAS 7440-43-9)
- 하. 크실렌(CAS 1330-20-7)
- 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 너. 톨루엔(CAS 108-88-3)
- 더.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

2. 약물적 유해인자: 메토티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妊婦禁忌) 성분

3. 물리적 유해인자

- 가. 고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 이 경우 용광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

로 인정된다.

나. 방사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방사선. 이 경우 엑스선 장치의 제조·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4. 생물학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유해인자. 이 경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나. 거대세포바이러스

다. 단순포진바이러스

라. 매독

마.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사. 독소포자충증

아. 파보바이러스 B-19

자. 풍진바이러스

5. 그밖에 임신 중인 군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4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u>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지(義肢) 장착을 위한 절단</u>	<u>제3조의2(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u> <u>의 세부기준) 법 제4조의2제2항</u> <u>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u> <u>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u> <u>호의 질병으로 한다.</u> 1. <u>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u> 2. <u>근골격계 질병</u> 3. <u>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u> 4. <u>직업성 암</u> 5. <u>정신질환</u> 6. <u>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u> <u>고시하는 질병</u> 제24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의지</u>----- ----- -----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u>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u>
	<u>대한 급여의 특례</u>
<u><신 설></u>	<u>제45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u>
	<u>해인자) 법 제41조의2에 따른</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u>
	<u>자”란 별표 8에 따른 유해인자</u>
	<u>를 말한다.</u>
<u><신 설></u>	<u>제45조의3(건강손상자녀 장애의</u>
	<u>정도) 법 제41조의4에 따른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u>
	<u>에 따른 등급”에 관하여는 영</u>
	<u>제31조를 준용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연 락 처	(02) 748 - 6851